

충남대학교 미래설계상담제 운영 규정

제정 2009. 2. 27. 규정 제1400호

개정 2012. 4. 27. 규정 제1520호

개정 2017. 7. 31. 규정 제1819호

개정 2020. 5. 19. 규정 제195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학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미래설계상담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) 미래설계상담제는 충남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생처에서 관장하고, 학생처장이 총괄 운영한다.

제3조(운영위원회) ①미래설계상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미래설계상담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3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⑧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제4조(교과목 편성) ①미래설계상담 교과목의 명칭은 「미래설계상담(Counseling for Future Planning)」이라 한다.

②미래설계상담 교과목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졸업을 인정받기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·운영한다.

제5조(교과목 이수) ①모든 학생은 미래설계상담 교과목을 졸업시까지 5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이수 및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의과대학 의예과,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및 편입학 학생의 경우는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 4. 27., 2017. 7. 31.)

②재입학 학생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.

1. 1학년 재입학의 경우 5회 이상
2. 2학년 재입학의 경우 4회 이상
3. 3학년 재입학의 경우 3회 이상
4. 4학년 또는 5학년 재입학의 경우 1회 이상

③복수(부)전공 이수 학생은 복수(부)전공하고자 하는 학과(전공)의 미래설계상담 교과목 이수를 면제한다.

제6조(외국대학 수학자의 이수) ①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받는 경우 미래설계상담 교과목 이수는 2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②외국대학에 교환학생 또는 해외인턴십 이수 학생 등으로 선발된 경우 본교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학하는 학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되, 국내대학 학점교류의 경우는 제외한다.

1. 본교에서 4개 학기 이하 수학하는 경우는 2회 이상 이수
2. 본교에서 5개 학기 이상 수학하는 경우는 3회 이상 이수

제7조(수강신청 및 이수기준) ①미래설계상담 교과목 수강신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며, 각 단과대학 학과(전공)의 장은 소속 학과(전공) 학생이 5개 학기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이수의 기준은 미래설계상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학기별 2회 이상 상담을

받는 경우로 한다.

③미래설계상담 교과목 이수 사항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제8조(담당교수 및 대상학생 배정) ①모든 전임교수(의과대학은 기금교원 포함)는 미래설계상담 교과목의 담당교수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연구년제·파견·휴직 및 장기 해외출장 등 학생상담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과(전공, 학부)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 7. 31.)

②담당교수는 각 대학 학과(전공, 학부)별 자율결정에 의하되, 전임교수(의과대학은 기금교원 포함)로 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학과의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초빙교원 또는 겸임교원으로 배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2. 4. 27., 2017. 7. 31.)

③담당교수별 지도학생 수는 각 대학 학과(전공, 학부)별 자율결정에 의하여 배정하되, 담당교수별로 균형있게 배정하여야 한다.

④담당교수 지정 및 대상학생의 배정시기는 학기별 수업일수 1/3선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(담당교수 변경) 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교수를 변경할 경우 소속 학과(전공, 학부)의 장은 해당 학생의 선택에 따라 담당교수를 지정·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하여 변경된 담당교수에게 배정된 학생이 본래의 담당교수가 학생상담의 불가능 사유 소멸로 학생상담이 가능할 경우, 본래의 담당교수에게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담당교수 및 학생 간 협의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상담 방법 및 일지) ①상담의 방법은 면대면상담, 집단상담, 인터넷상담 등으로 구분한다.

②미래설계상담은 매학기 학생 1인당 면대면 상담 1회 이상 포함하여 총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19.>

③면대면상담은 학생 배정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

학생 배정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5인 이내를 소집단으로 하여 상담을 실시하되, 이 경우 면대면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④상담일지의 공개는 상담교수와 상담학생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.

⑤상담의 결과는 미래설계상담 전산시스템에 입력·보관하며, 상담내용 중 상담여부와 상담분야는 필수 입력사항으로, 면담 세부내용의 입력은 상담교수의 자율사항으로 한다.

⑥상담내용의 공개여부에 관한 모든 권한은 상담학생에게 주어지며, 상담교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 상담내용의 열람여부는 상담학생의 선택에 따른다.

제11조(상담) ①담당교수는 상담 가능시간을 학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지하며, 각 학과 사무실에서 지원·관리한다.

②상담교수는 매학기별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상담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본교 미래설계상담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5. 19.>

③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생에 대한 신상관리
2. 휴학, 복학 등 학사 및 학업에 관한 사항
3.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
4. 사회 봉사활동 등 경력에 관한 사항
5.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사항
6. 기타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제12조(학생 정보보호) 담당교수 및 관계 담당자는 학생상담 내용을 포함한 학생 개인정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.

부 칙 (규정 제1400호, 2009. 2. 2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규정 제1520호, 2012. 4. 2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규정 제1819호, 2017. 7. 3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규정 제1953호, 2020. 5. 1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